

예산총칙

2021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64,714,360	16,941,431
일반회계	545,013,214	16,350,396
특별회계	19,701,146	591,034
기타특별회계	19,701,146	591,034
상수도특별회계	3,928,275	117,848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312,769	69,38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99,417	29,983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3,404,665	102,140
주차장특별회계	210,000	6,3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6,020	1,381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800,000	264,0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51,22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부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